

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4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4월 29일

3. 제안이유

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명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○ 명칭변경

- 농촌진흥원 → 농업기술원
- 농촌진흥원장 → 농업기술원장
- 진흥원 → 기술원

○ 불합리한 사항 개선·보완

- “검정”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삭제
- 분석 및 검정 → 분석
- 농업기술,작물,원예,축산 → 농작물(안 제2조 제1호, 제3호)

5. 검토의견

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“검정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인 바

(안)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의 경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고

(안) 제7조 제1항 제1호는 시험 거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.